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세종대학교 학칙 제39조(교과) 및 제40조(교과과정)의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과정의 구분)

- ①교과과정은 교양, 전공, 교직으로 구분한다.
- ②교양 교과는 공통교양필수, 균형교양필수, 학문기초교양필수,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
- ③전공 교과는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 ④교직 교과는 교직과정 이수자를 위해 운영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교과과정의 운영주체)

- ①교양 교과과정 제·개정을 포함한 운영·관리는 대양휴머니티칼리지에서 한다.
- ②전공 교과과정 제·개정을 포함한 운영·관리는 교무처 수업과에서 한다.
- ③교직 교과과정 제·개정을 포함한 운영·관리는 교무처 교직과에서 한다.

제4조(교과과정 개편 원칙) 교과과정을 개편할 때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본교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부합성
2. 본교 특성화 방향과의 부합성 또는 필요성
3. 본교 7대 핵심역량과의 관련성
4. 관련 제반 규정(학칙, 규정, 세칙, 내규 등)과의 정합성
5. 사회 환경 및 시대적 변화와 동향에 따른 전공능력 대응성
6.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 기업, 계약학과 등 직접적 수혜기관 등)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
7. 이전 교육과정과의 연결성 및 신규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적 타당성

제5조(교양 교과 편성 원칙)

- ①대학의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등에 부합하게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 ②교양교육의 3대 요소인 기초교육(대학교육을 위한 기초지식 및 문해교육), 교양교육(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식견을 기초로 한 가치관의 형성과 창의융합적 사고의 함양), 소양교육(정서적, 심미적, 윤리적 공감능력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의 균형교육을 추구한다.
- ③균형교양을 실현하기 위해 교양필수를 공통필수, 계열별필수로 이원화하고, 계열별필수는 균형교양필수, 학문기초교양필수로 분류한다.
- ④학교 차원에서 모든 재학생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세종핵심역량기반 교양과목은 공통교양필수로 지정한다.
- ⑤균형교양필수는 자신의 소속 계열과 다른 영역에서 선택 이수하도록 하는 배분이수제를 시행한다.
- ⑥학과 차원에서 소속 전공학과 학생들의 전공학업 이수를 위한 기초수학능력 함양에 필요한 교양과목은 학문기초교양필수로 지정한다.

⑦전인적 교양인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 교양과목은 개인 차원에서 자유롭게 선택 수강하도록 교양선택으로 지정한다.

제6조(교양 교과목 편성 기준)

①영역별 교양 교과목 편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수학점	비고
공통교양필수	13	2022학년도 입학자 기준
균형교양필수	6	배분이수제
학문기초교양필수	0-30	학과별 지정

②균형교양필수는 [역사와사상], [경제와사회], [자연과과학], [문화와예술] 4개 영역 중 자신의 소속 계열과 다른 2개 영역에서 6학점 선택 이수한다.

영역	제외 계열	비고
역사와사상	인문과학	2개 영역 6학점 선택이수
경제와사회	사회과학, 경영경제, 호텔관광, 법학	
자연과과학	자연과학, 생명과학, 전자정보공학, 소프트웨어융합, 공과	
문화와예술	예체능	

③학과(전공) 별로 학문기초교양필수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전공 교과 편성 원칙)

- ①대학의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등에 부합하게 전공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②단과대학, 계열, 학과의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 과업,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종합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 ③전공 교과는 학과(부/전공)별 특이점(인증제, 인력구조, 취업, 예산, 지역사회 연계 등)에 따른 시대변화와 사회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편성한다.
- ④전공 교과는 난이도와 심화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편성한다.
- ⑤이수 순서, 단계와 난이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교과목을 기초교과목과 응용교과목, 전공 필수와 전공선택 과목으로 분류하여 편성한다.
- ⑥학과의 특성에 따라 논문, 프로젝트, 작품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졸업이수 기준을 설정한다.

제8조(전공 교과목 강의 편성 기준)

①학과(부)별 전공 교과목 강의 편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수학점
통합되지 않은 단일 학과	연간 최대 72
통합되지 않은 2개 전공으로 이루어진 학과(부) 및 입학 정원 50명 이상인 단일학과	연간 최대 96
통합되지 않은 3개 이상의 전공으로 이루어진 학과(부) 입학 정원 100명 이상인 단일학과	연간 최대 120
건축학 전공	123

- ②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분반 강좌는 1개 강좌로 본다.
- ③외국인 대상 강좌 개설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개설이 필요한 경우 학과(부)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각 학과(부)장은 다른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를 소속 학생들이 전공 선택 과목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과과정 개편 절차)

- ①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의 개편 주기는 4년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사항 시에는 개편 주기와 무관하게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
 - 1. 학문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사회 수요의 변화가 있을 때
 - 2. 교육과정과 연관된 법률적 조치가 있을 때
 - 3. 교육과정의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
 - 4.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 ②교양 교과과정의 개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양교육과정위원회가 교양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통과시킨 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학문기초교양필수의 일부 개편은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7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학장에게 제출하며, 대양휴머니티칼리지 학장은 접수된 개편안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 해당 개편안이 교양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며 전공교육에도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된 개편안은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 ③전공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한 학과(전공) 또는 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7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분과위원회 심의 후 개편 요청 사항을 서면으로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교무처장은 접수된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 개편안을 교육과정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부 칙

- 1. (시행일)이 지침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이 지침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수행한 관련 업무는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